

■ 최신 판례 ■

[공정거래] 가격 담합을 했더라도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위법하지 않다

김지홍 변호사 | 이병주 변호사

1. 판결의 취지

가. 사업자들이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합의를 하였더라도, 그러한 합의만으로 곧바로 공정거래법에 위반한 '담합'이 되는 것이 아니며, 합의가 관련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지 심사하여 합의의 위법성을 판단해야 한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이 내린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렉서스자동차와 다른 수입승용차 또는 국산 고급승용차 사이에 대체관계가 있는지를 비롯해서 관련시장을 국내 렉서스자동차 판매시장으로 한정해야 하는 이유 내지 근거에 대해 증명해야 한다.

2. 사건의 개요 및 대법원의 판결

일본 토요타에서 생산하는 프리미엄 차량 렉서스는 한국토요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한국토요타')가 독점 수입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요타는 다시 국내 딜러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딜러들로 하여금 렉서스자동차의 판매 및 정비서비스업을 하게 하였습니다. 9개 렉서스 국내 딜러들 중 5개 사업자들은 2006년 4월부터, 나머지 4개 사업자들은 2006년 6월부터 렉서스자동차의 가격할인 제한, 선계약 우선원칙(한 딜러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경우 다른 딜러가 고객에게 추가 할인 등으로 유인해서 기존 계약을 파기시키고 자신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원칙) 등에 합의하고 이러한 합의를 2007년 5월까지 실행하였습니다(이하 '본건 담합').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본건 담합의 관련시장은 국내 렉서스자동차 판매시장인데, 일부 병행수입업자를 통해 판매되는 렉서스자동차를 제외하고 본건 담합에 참가한 9개 딜러들의 국내 렉서스자동차 판매시장에서 시장점유율 합계가 거의 100%에 달하고 본건 담합이 렉서스자동차의 판매가격을 직접 고정시키는 효과를 초래하여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렉서스자동차를 구매할 수 없게 하는 등 본건 담합이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잘못되었다며 이를 취소하였습니다. 본건 담합의 관련시장은 “국내 렉서스 자동차 판매시장”이 아니라 “최소한 렉서스자동차와 대체관계에 있는 수입승용차 및 국산 고급승용차 시장 전체”인데 해당 시장을 살펴보면 렉서스 국내 딜러들의 시장점유율이 낮아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관련시장을 위와 같이 보아야 한다며 다음 사실을 들었습니다. ① 렉서스자동차는 다른 수입자동차 및 국내 고급승용차와 경쟁관계에 있고 그들 중에는 제품형태, 기능이나 효용, 등급, 가격 등에 있어서 렉서스자동차와 대체관계에 있는 제품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② 일반적으로 수입자동차 및 국산 고급승용차는 가격탄력성이 국산 중·소형 승용차에 비해 크기 때문에 렉서스자동차의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들이 대체관계에 있는 다른 제품들로 소비를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서울고등법원은 관련시장을 공정거래위원회와 달리 넓게 획정한 후 렉서스 국내 딜러들의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약 15%보다 낮기 때문에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결론 내린 다음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주어진 증거만으로 관련시장을 렉서스자동차와 대체관계에 있는 수입승용차 및 국산 고급상용차 시장 전체로 획정하기 어렵고, 관련시장 획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으므로 서울고등법원은 관련시장 획정을 다시 심리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 판결의 의의

종래 미국에서는 가격담합과 같이 경쟁제한성이 높은 담합을 '경성카르텔'이라 하여 특별히 경쟁제한성 여부를 묻지 않고 당연위법(per se illegal)으로 처리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도 공동행위를 심사하는 내부기준인 「부당한 공동행위의 심사지침」에 이러한 논의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연위법' 법리는 입법론으로는 고려할 수는 있지만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에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격담합과 같은 '경성카르텔' 또한 당연히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경쟁제한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대법원은 가격담합이라도 당연히 위법한 것은 아니고 경쟁제한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경성카르텔의 경우 관련시장 확정 또한 불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지만,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가격담합의 경우에도 관련시장 확정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담합 사건을 처리하면서 이전보다 명확하게 관련시장을 확정해야 할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보다 정치한 카르텔 집행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관련시장 확정의 입증책임을 명확히 하고 입증정도를 엄격히 한 결과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담합을 제재함에 있어 관련시장 확정 및 경쟁제한성 심사에 이전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담합의 최종피해자인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공정거래사건에 비해 이를 적발하고 제재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더욱 더 그렇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금번 판결로 구체적인 결론은 내리지 않고 서울고등법원에게 관련시장 확정을 다시 검토할 것을 명한 것이므로 최종적인 결론에 대해서는 그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4. 다운로드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757 판결